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되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에 대한 보상 근거 유지〉

■ 이상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48호)

2026. 3.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상식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6. 1. 19.
3. 회부연월일 : 2026. 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의무경찰대의 설치·운영과 전투 및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에 대한 보상 등의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5월 17일 전역을 마지막으로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무경찰대의 설치 근거 법률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되, 전투 또는 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의무경찰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은 계속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보상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보상 제도를 계속하여 유지·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존속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이 법은 의무경찰대의 의무경찰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경찰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의무경찰”을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대의 대원과 「전투경찰대 설치법」(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정의함(안 제2조).
- 3)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군인에 준하여 급여금을 지급함(안 제3조).
- 4) 의무경찰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함(안 제4조).

Ⅲ. 검토의견

제정안은 2023년 5월 17일 전역을 마지막으로 폐지된 의무경찰제도의 근거법률인 현행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되, 의무경찰대 복무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의무경찰대 대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현행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사망 급여금 등)과 제8조제1항을 유지하려는 것임(제정안 본칙 제1조~4조, 부칙 제1조~제4조).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무경찰대의 의무경찰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경찰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의무경찰”이란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대의 대원과 종전의 「전투경찰대 설치법」(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전투경찰대의 대원을 말한다.
제3조(사망 급여금 등)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제4조(보상) 의무경찰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에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3호에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③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서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5조제3항과 제25조제6항에서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3조제1항제4호에서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3호에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⑤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0호 중 “군인·의무경찰과”를 “군인과”로 한다.

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3호 중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을 “의무소방원”으로 한다.

제 정 안

⑦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7항 중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⑧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1)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부칙 제2조, 제4조)

의무경찰은 「병역법」 제25조¹⁾에 따른 전환복무로서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것 대신 의무경찰대에 소속되어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 보조 임무를 수행하는 제도임.

2020년부터 입영대상자가 2만~3만명 부족해지는 것²⁾ 등이 고려되어 2017년 7월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5년) 및 경찰 인력 증원이 국정과제로 설정³⁾되었으며, 2021년 6월 모집하여 2021년 11월에 입영한 기수(복무

1) 「병역법」 제25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추천을 받은 사람을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이들을 입영하게 하여 정하여진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킬 수 있다.

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의무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을 추천받은 경우

2) KTV 국민방송 2016년 5월 17일 방송, “국방부 “2023년부터 현역자원 병역특례 폐지”

3) 의무경찰 단계적 축소 및 경찰인력 증원

구분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월
의경규모	25,911명	19,495명	8,976명	4,152명	1,045명	폐지

자료: 「문재인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96면, 2021년 5월

기간 18개월)가 전역한 2023년 5월 17일 이후에는 의무경찰 대원이 없음.

제정안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은 의무경찰대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려는 것임. 그리고 제정안 부칙 제4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제3호⁴⁾ 등 현행 법률에서 의무경찰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제정안을 통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법률에서 의무경찰의 개념을 삭제함으로써, 동 법률과 개념이 유지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일 수 있어 보임.

(2)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 등에 대한 보상 근거 유지 (제정안 제1조~제4조)

현행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현행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하도록 하고 있음.⁵⁾

동 규정들에 따라 공무수행 중에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경찰 및 의무경찰로 간주되는 전투경찰 순경⁶⁾에 대해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의 전공사상심사⁷⁾가 의결된 2,999건 중 복무기간 중에 신청된 사례는 2,762건이고, 전역 이후 의결된 건은 237건임. 전역 이후 전공사상심사가 의결된 사례 중에는 전역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전공사상심사가 신청된 사례⁸⁾도 있음.

5)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사망 급여금 등)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군인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을 지급한다.

제8조(보상 및 치료) ①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6)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24일 (구)「전투경찰대 설치법」에서 개정되면서 마련된 부칙 제4조(전투경찰순경 등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됨.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3425호, 2015. 7. 24.> 제4조(전투경찰순경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환복무된 전투경찰순경은 이 법에 따른 의무경찰로 보고, 전투경찰대 대원은 이 법에 따른 의무경찰대 대원으로 본다.

7)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투·공무수행 중 발생한 의무경찰의 사망·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등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이하 “보통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8) 1979년~1982년 복무한 이후 2019년 전공사상심사를 신청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음.

< 2015년 ~ 2025년 전공사상심사·의결 현황 >

전체 의결 건수	복무 중 신청된 건수	전역 후 신청된 건수
2,999건	2,762건	237건

자료: 경찰청

제정안을 통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이후에도 복무 기간 중 부상 등을 당한 의무경찰 및 종전 전투경찰순경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추후에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제정안 제1조는 동 법률이 의무경찰로서 전투 또는 공무 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사람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는 것을 명시함.

제정안 제2조는 보상 등의 대상인 의무경찰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대의 대원과 종전의 「전투경찰대 설치법」(2015년 7월 24일 법률 제1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정의함.

제정안 제3조와 제4조는 현행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망 급여금 등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의하고 있음.

제정안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폐지된 이후에도 기존에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전환근무를 수행 중에 부상 등을 입은 의무경찰 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취지임.⁹⁾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입법례로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있음.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제정안과 동일하게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사망 급여금 등), 제4조(보상)으로 구성됨.

다만, 문구 측면에서 제정안 제3조는 공무수행 중 ‘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행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부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상 용어가 보다 쉽게 이해되므로 상이를 부상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제3조)

제정안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 부칙 제3조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9) 「대한민국헌법」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폐지된 이후에도 동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이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경찰청은 제정안에 동의하는 의견임.

경찰청은 2023년 5월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폐지함이 타당하나, 공무 중 부상·사망한 의무경찰에 대한 보상 규정은 존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